검 토 보 고 서

의 안 제34호

2021. 04. 08.

건 명 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		
제안 및 제출자	서원 의원 외 인	제출연월일	2021. 04. 01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21. 04. 01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이 조례는 논산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□ 주요내용

-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 논산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이어야하며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 표자 이어야 함.(안 제2조)
- O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 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(안 제4조)
- 청년기업 지원사업 및 청년기업 인증(안 제5조 제6조)

□ 검토의견

- O 우리시 청년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봄.
- O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청년기본법 제18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 됨.